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김 현 정[†]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 대부분 남편의 학대에 대한 자기 방어 때문에 살해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매 맞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배우자 살해에 대한 윤리적 비난, 그리고 보수적인 사법체계 속에서 피학대 여성의 경험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을 살해한 남편보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형량이 훨씬 길다. 이에 반해 서구에서는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 피학대 여성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통해 피학대 여성에 대한 변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내학대의 특성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 증언을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판결에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학대 여성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할 정보로 제공될 때 판결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를 모의 배심원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남편살해의 세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 즉 '상황시나리오(일반적인 살해사건)와 '외도시나리오(피고인 여성의 외도가 개입된 사건)', 그리고 '학대시나리오(장기간의 피학대 사실이 제시된 사건)'의 시나리오를 피험자에게 읽게 한 후 판결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시나리오'와 '외도시나리오'에서는 유죄판결이 많은 반면, '학대시나리오'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피학대 여성의 범행동기와 과거력(학대사실)이 제시되면 살인이라고 언도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에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여성의 피학대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형사법 체계내의 변화와 개선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가정폭력, 배우자 살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매 맞는 여성 증후군, 양형, 정당방위

[†] 교신저자 : 김현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 radifu@hanmail.net

일반적으로 여성의 범죄율이 남성의 범죄율에 비해 더 낮은 공식기록을 유지해왔다(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하이덴손, 1985).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범죄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1999). 2005년 전체무기수형자 1,085명중 여성무기수형자는 44명으로 범죄 유형은 살인이 36명(85.7%)인데 살인 피해자의 절반 이상(53.3%)이 남편이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학대에 대한 자기 방어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영희 외, 2004; 이수정, 서진환, 2005; 채영주, 2005). 남편살해로 청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82.9%(107명)에 달했고 매월 1회 이상 폭행을 당한 경우도 66.6%로 조사되었다(김영희 외, 2004). 이처럼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성 살인은 남성에 의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경험을 가진 여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매 맞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배우자 살해에 대한 윤리적 비난, 그리고 보수적인 사법체계 속에서 피학대 여성의 학대남편 살해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평균양형기간이 9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명숙, 2004). 이와 달리 부인을 살해한 남성가해자의 평균 양형은 125.17개월로 가족구성원간의 살해사건에 있어서 가장 짧은 형을 받은 반면, 남편을 살해한 여성가해자가 170.57개월로 가장 긴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지선, 2006). 무기형 선고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행위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보다 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한인섭, 2005), 배우자 살해의 경우에 여성이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양형을 받아왔다(박순진, 2006). 반면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아 오던 남편이 폭력의 연장선으로 아내를 살해한 경우는 ‘살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폭행치사’, ‘중과실치사’,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죄명과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¹⁾

배우자 살해사건의 양형에 나타난 성차별성에 대하여 Wrightman(2001)은 사법체계 내에서 가정폭력의 통념을 수용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첫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정신이상이나 과대망상이라고 간주하게 하고, 둘째, 사법체계의 성편향성이 여성의 경우 아내를 살해한 남성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게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2005년 3월에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1) 일례로, 20여년간 아내를 구타해 오던 폭력전과 4범의 남편 김00가 새벽 3시경부터 아침까지 아내를 구타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김00는 폭행치사로 5년을 구형받아 3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21년간의 결혼기간 중 외도와 폭력을 일삼아 오던 남편 이00가 아내를 3~4시간에 걸쳐 차에 태우고 다니며 머리와 전을 아내의 하이힐 뒷굽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하고 마당에서 온 몸을 발로 짓밟는가 하면 한탕강에 집어 넣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폭행치사로 기소되었다(이명숙, 2004).

살해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최근 미국에서는 학대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상당수의 여성들에게 무죄나 감형의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숙, 2004; 이수정, 2006). 미국에서는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사건에 대하여 1980년대 초부터 전문가 증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미시건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법원에서는 피학대 여성증후군에 대한 심리검사결과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대개의 전문가 증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특징을 피학대 여성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나아가 정당방위로 개념화함으로써 피학대 여성에 대한 변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과 편견이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내학대의 특성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 증언을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피고인 여성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냈다(Schuller, 1992; Schuller & Smith, 1994).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구와 같이 피고인 여성의 피학대 경험이 고려해야 할 정보로서 제공된다면 판결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의 배심원 실험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양형은 법관의 재량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양형을 위한 법률 규정들이 충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형과정에서 전통과 경험은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류전철, 2006). 그러나 법관의 양형이 경험적·전통적 요소에 의존함으로써 양형의 불균형과 부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범죄에 따른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그것에 기반 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마련의 기준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모의 배심원 실험을 통해 양형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가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그에 따른 형사법체계내의 개선점 등에 대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피해여성의 심리상태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고립감,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여, 만성적 우울증과 무기력감, 죄의식과 자책감, 신체화 병 등으로 설명된다. 위커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정서, 지각, 의식차원에서 나타내는 일련의 특성을 “피학대 여성 증후군”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고 있다(Walker, 1984). 피학대 여성 증후군은 DSM-IV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하위범주에 규정되어 있는 증후군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된 배우자 학대는 피해여성들의 정서, 의식, 지각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데 1984년 Walker는 이러한 일련의 특성을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으로 칭하여 이들의 절망감과 의존적 성향을 개념화하였다(이수정, 2006).

위커는 학대 받은 여성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여성에 대한 구타와 학대가 세 국면을 순환·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왜 여성이 자

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반격행위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긴장수립(tension-building phase)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 남성이 사소한 구타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다. 피해자는 공포와 긴장에 짓눌려 보다 심각한 폭력을 비껴가기 위해 유화적·수동적으로 된다. 두 번째 격심한 구타(acute battering incident)국면에서는 남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아내를 학대한다. 이 국면에서 여성은 잔인한 폭력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다. 세 번째는 진정(calm loving respite) 국면으로, 남편이 폭력에 대한 변명, 후회나 용서를 빌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여성은 이를 믿는다. 이 세 번째 국면이 남편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은 반복되며 폭행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악화된다.

피학대 여성 증후군은 이러한 순환과 반복의 과정을 통해 여성이 어떻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반복된 폭행과 학대의 결과 긴장수립단계에 놓여 있는 여성은 당장은 구타가 전개되지 않더라도 곧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제2단계가 개시될 것임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싸일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피학대 여성 증후군은 남편의 학대가 개시될 때 방어의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인 여성의 주관적 믿음을 해명해주고 그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조국, 2001). 또한 세 번째 국면에서 학대남편이 보이는 태도가 피학대 여성으로 하여금 학대 남편과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반복의 결과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²⁾으로 고통 받게 되어 자

신을 구타하는 남성의 힘을 믿게 되어 그에 대항하는 어떠한 시도도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이 반복되면서 피해 여성들은 어떤 조짐을 보일 때 폭력이 나타나기를 이해하게 되지만 그런 이해가 폭력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 결과 폭력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그저 폭력이 빨리 끝나도록 하기 위해 굴복하게 된다.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일에 자신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는다. 피해 여성들이 느끼는 무기력감은 현실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복종적으로 만든다. 더욱이 오랜 학대관계 속에서 피해 여성들은 학대남편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신고나 법적 처벌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더 큰 폭력을 당할까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점점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된 채 학대 남편과의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를 받아왔던 여성들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상해를 경험하게 되어 그 결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 이에 관련하여 최근에는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진단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수정, 2006;

2) 학습된 무기력은 Seligman 박사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개에게 일련의 전기충격을 계속 가하자 개는 고통을 피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자 나중에는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조차 중지 하였다는 실험관찰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채영주, 2005). PTSD란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다. PTSD는 DSM-IV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첫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을 위협당한 경험을 말하며, 둘째, 개인이 느끼는 공포, 무력감 및 고통경험을 말한다. 즉 강간, 아내구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악몽을 꾸거나 비슷한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불안, 악몽, 두려움, 무력감, 공포 등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낼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가정폭력 및 학대는 외상적 사건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이, 2001; 채규만, 2001; 채영주, 2005; Foa, 1998; Jongasma & Budrionis, 2003).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는 언어적·정신적·신체적·성적 학대 등 매우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빈도와 심각성이 매우 광범위한 편이다. 발생빈도와 양상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피학대 여성이 보이는 증상의 상당수는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이나 학대의 강도 및 기간이 정신건강문제의 발병 위험성 혹은 증상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수정, 2006).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여성들은 정서, 의식, 지각 차원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초래된다. 피학대 여성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고 사고력과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정도의 공포를 경험하고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조차 수치심을 느끼며 타인을 의심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신을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PTSD를 경험하는 피학대 여성들은 정서조절, 의식, 자기지각, 가해자 지각, 타인과의 관계, 의미구조차원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불행감을 느끼고, 만성적으로 자살에 몰두하며, 자해를 하거나 극도로 억제된 분노 등 정서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외상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거나 일시적인 해리증상을 보이는 등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무력감을 느끼며 수치심, 죄책감, 자기비난의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는 등 자기지각에서도 변화를 나타내고, 가해자를 복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때로는 역설적으로 가해자를 합리화하는 등의 지금까지 자신이 유지해오던 신념을 상실하며 지속적인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채영주, 2006). 따라서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랜 기간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들에게 바로 그 학대가 범행동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에 대한 정당방위 논의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행동에 대한 이해는 법정에서의 변호전략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배우자를 살해한 피학대 여성에 대한 변호전략은 크게 의료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심신미약이나 정신장애 주장과 남편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로 나누어진다. 변호전략의 방향이 재판과정에서

판결이나 형량에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양육권 유지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 입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이수정, 2006).

정신장애 주장

먼저 정신장애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남편의 살해를 이상심리 상태에서 일어난 행동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학대 여성을 변호하고자 하는데, 이때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개념이 동원된다. 이들 이론이 도입은 피학대 여성들의 행동이 장기간의 걸친 폭력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였고, 법적 대응과정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능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편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속칭, 노예의 정신상태, 폭력에 대해서 노예가 된 정신상태’로 설명함으로써 피해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즉 아내구타의 피해여성의 남편살해 행위는 ‘매 맞는 아내의 정신착란, 인지적 왜곡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인 것이다. 이는 여성이 자기방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정신착란’이라고 주장할 때 낮은 형을 선고받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학대 여성 증후군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국의 판례 및 주 입법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4년 피학대 여성 증후군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고, 이후 대다수 주의 형사재판에서는 전문가 증언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에 의한 불법한 공격이 임박하였고 반격행위가 필요하다는 여성 피고

인의 믿음이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하여 배심이 평가하도록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살인을 ‘증상’, ‘장애’로 개념화할 경우 심리적인 병리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 폭력 피해 여성의 병리적 이미지를 증가시켜 낙인과 편견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여성을 비합리적, 비이성적 존재로 각인시킴으로써 피해여성들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상적 경험은 합리적인 능력을 저해한다는 공식을 갖게 함으로써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Follingstad, 1994; Wrightsman, 2001).

따라서 피학대 여성과 학대남성에 대한 통념을 다루고, 학대의 물리적인 심각성을 비롯한 피학대 여성의 학대의 역사를 증언하고, 학대자와 피학대 여성 간의 관계, 배심원의 지배적인 관심사, 즉 왜 떠나지 못하는가, 왜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했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상심리로 피학대 여성의 살해행위를 설명하려는 입장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남편을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감면하거나 무죄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병리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론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방위 주장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전통적인 정당방위의 개념을 비판하며 정당방위³⁾에 대한 법해석을 수정

3)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

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기존의 정당방위 개념은 자기방어의 능력과 의지를 갖춘 성인남성 간의 직접적인 맞대결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학대를 받아온 여성의 경우에는 학대 남편과 피학대 여성이 비등한 관계가 아니라 힘의 우열관계가 확고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자신을 방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정당방위 개념은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두려워하는 폭력 피해 여성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처한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정당방위 이론 및 판례의 경향은 강자와 공격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여성보다 남성, 아동보다 성인에게 유리한 성인남성위주의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인섭, 1996; 조국, 2001).

두 번째로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이다.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이란 ‘공격이 직접 임박한 것, 방금 막 시작된 것, 또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 개념에 의하면, 당일에는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으나 지속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잠자는 남편을 살해한 경우는 현재의 침해가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폭력을 계속 행사하다가 잠시 쉬고 있거나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경우도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오로지 칼 등의 흉기

를 들고 위협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즉 즉각적인 공격이 있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당일에 아무런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수면 중이거나 무방비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피학대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직면한 대결상황에서만 폭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한인섭, 1996; 이명숙, 2005). 폭력을 행사하다 잠시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현재 구타당하지 않더라도 구타의 ‘현실적 위협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침해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당방위에 있어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방어의 필요성은 통상 건전하게 사유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방어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첫째, 합리적 인간이 과연 어떤 수준의 지적 수준과 물리적 수단의 구사능력이 있는 자인가 둘째, 합리적 인간이 피공격자의 입장에 선다고 할 때 그 입장에 선다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 규범에서는 합리적 인간은 통상의 기능, 기질, 육체적·정신적 속성을 갖는 인간으로 정의되는데, 사실상 법원이 상정하는 평균적이 사람은 남성(Wrightsmann, 2001)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 남편을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합리적 믿음’에 대하여 “가상의 합리적·신중한 인간이 생각하는 바를 기초로”평가하는 것은 잘못이고, “장기화된

각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당화사유이다.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공격자의 부당한 침해가 당면해 있고, 그에 대해 방위의사를 갖고 방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행위가 침해를 종식시키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당화된(한인섭, 1996).

학대의 역사를 고려하면서 피학대 여성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인간의 기준이 남성중심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미국 법원에서는 합리적 인간이란 객관적 기준에 피고인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여 합리적 인간 개념의 세분화, 주관화를 꾀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과 동일한 사람의 기준에서 피고인이 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합리적 여성’을 기초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섭(1996)은 정당방위의 인식 및 판단 주체로서 ‘합리적 여성’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실질적 정의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수잔 에스트리치는 이러한 합리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주관화하는 것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정당방위 일반에 적용되는 방위행위의 합리성 평가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학대 여성의 반격행위를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행위를 일률적으로 모두 합리적으로 보고 정당화하려는 논변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의 판결 요인에 관한 연구

폭력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에 대한 판결에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은 매 맞는 여성에 대한 편견,

피학대의 경험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배우자를 살해한 행동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요인이 피학대 여성의 살해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배심제, 전문가 증언 등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조건 하에서 피험자들(모의 배심원)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피학대 여성의 살해 사건의 판결 및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Schuller, 1992; Terrance & Peeblest, 1993; Schuller & Cripps, 1998; Follingstad, 1996; Follingstad at al, 1997; Terrance at al, 2000).

어떠한 변수가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가를 둘러싼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변수로 주관적 조건 대 객관적 조건의 제시이다. 즉 배심원에게 남편의 이전의 학대 행동, 남성의 폭력에 대한 여성의 인지, 피고인 여성과 남성간의 신체적 차이, 여성의 심리상태 등과 같은 주관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지침이 주어졌을 때가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위협의 현저성, 합리적 믿음과 같은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제시받았을 때보다 무죄 판결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ollingstad, 1997; Terrance, 2000). 즉 학대 받은 피고인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배심원의 판단 과정에 통합함으로써 객관적 조건만 제시되었을 때보다 피학대 여성에 대한 무죄 판결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것은 매 맞는 아내에 대한 배심원들의 편견과 통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학대 여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 여성을 신뢰하지 않고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chuller & Smith, 1994; Follingstad, 1997). 다시 말해 피학대 기간과 경험, 학대의 심각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덜 제공되었을 때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고인 여성의 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판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재판절차에 피학대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대와 관련한 정보, 피학대 여성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배심원들의 판단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변수로 피고인 여성의 외도문제인데, 학대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을 면담한 국내 연구(김영희외, 2004)에 의하면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남자가 있을 경우 치정살인으로 몰고 가서 결국 남편을 살해하게 된 원인을 피고인 여성의 외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과 학대로 인하여 문제를 의논할 사람을 찾다가 또는 심리적 지지를 필요로 할 때 나타난 다른 남자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외도로 인해 남편에 대한 고의적인 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주변에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강조하여 불륜의 관계로 몰아 학대받은 여성을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도와 살인이라는 이중의 비난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외도변수와 피고인 여성의 학대경험을 변수로 제시하였을 때 판결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피학대 여성의 남편살해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피험자(모의 배심원)를 통해 알아보는 연구들은 배심원제도의 도입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배심원에게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의 문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물을 인식하거나 해석하고 규정할 때 어느 정도 일관되고 일반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준거들을 갖고 있다. 이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이나 가치가 준거들로 작용하게 된다. 즉 배심원들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때 맞는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여성의 피학대 기간과 경험, 학대의 심각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덜 제공되었을 때 학대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 여성의 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판결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재판절차에 피학대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대와 관련한 정보, 피학대 여성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배심원들의 판단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방 법

연구가설

첫째,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죄명판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 유형에 따라 죄명판단에

성별 차이가 것이다.

연구설계

연구대상

피험자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학생 58명(여학생 29명, 남학생 29명)이다. 대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1.86세(연령범위 20세-27세, 남학생 평균연령 23세, 여학생 평균연령 21세, 표준편차1.868)이다.

독립변수

본 연구는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학대를 받아오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피험자가 배심원이 되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각 피험자에게 3개의 시나리오를 읽게 하였다.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했던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으로, 현재 공판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에 기초하여 재구성한 것이었다. 세 개 시나리오에는 공통적으로 사건 당일의 기록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추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상황시나리오’는 피학대 여성이 남편의 폭행에 대응하다 살해한 경우로 전형적인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사건(피해자인 남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아내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다 남편을 살해)을 묘사한 것이었다. 두 번째 ‘외도 시나리오’에는 피학대 여성이 외도한 사실(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인 남편이 음주하여 귀가한 후 피고인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폭행하자 피고인이 남편과 실랑이 하던 중 남편을 살해)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 번째 ‘학대 시나리오’는 앞의 두 시나리오와는 달리 동기를 설명하는 추

가 시나리오에 살인범이었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받아 온 경험(학대받아온 횟수, 정신과 치료 경험, 자녀에 대한 피해)이 기술되었다.

종속변수

피험자는 3개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각 시나리오마다 살인, 과실치사, 정당방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결하고, 판결의 확신성에 대하여 1점-5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또한 피험자에게 각 판결의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연구절차

피험자에게 본 연구는 피험자가 배심원이 되어 살인사건을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피험자에게 사건 당일의 내용이 기록된 사건개요와 범행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첫 장에 함께 제시하였고, 다음 장에 죄명을 선택하고 확신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피험자가 각 시나리오를 차례로 읽은 후 그에 따른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종속측정치 표시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결 과

시나리오 유형에 따른 판결의 빈도 분석

우선 각 시나리오별 판결의 빈도를 살펴본다(표 1).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빈도 상으로는 ‘상황 시나리오’에서 살인과 과실치

표 1. 시나리오 유형별 판결의 빈도(전체N=58, 남=29, 여=29)

		살인		과실치사		정당방위	
		N	비율	N	비율	N	비율
상황 시나리오	남	8	80%	13	62%	8	30%
	여	2	20%	8	38%	19	70%
	합	10	100%	21	100%	27	100%
외도 시나리오	남	4	44%	11	46%	14	56%
	여	5	56%	13	54%	11	44%
	합	9	100%	24	100%	25	100%
학대 시나리오	남	2	100%	3	50%	24	48%
	여	0	0%	3	50%	26	52%
	합	2	100%	6	100%	50	100%

사의 유죄판결이 31건으로 정당방위 판결보다 많았고, ‘외도 시나리오’에서도 살인과 과실치사의 유죄판결이 33건으로 정당방위 판결보다 많았다. 반면, ‘학대 시나리오’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이 50건으로 살인과 과실치사의 유죄판결(8건)보다 많이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의 판결 빈도 상에 나타난 성차에 대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바, ‘상황 시나리오’ $\chi_{58}^2 = .010, p < .05$,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외도 시나리오’ $\chi_{58}^2 = .727, p < .05$, ‘학대 시나리오’ $\chi_{58}^2 = .010, p < .05$, 성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상황 시나리오’에서만 성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상황 시나리오’처럼 범행의 동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남자는 살인으로 여자는 정당방위로 판결함을 알 수 있다. ‘외도 시나리오’에서는 판결에 성별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범행의 동기를 피고인의 외도로 판단하여 죄명 판단에 있어 남녀 피형자

의 성별이 작용하지 않은 채 각 판단에 고른 성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 시나리오’에서는 남편의 오랜 학대와 그로 인한 피해를 범행의 동기를 판단하여 죄명 판단에 있어 역시 남녀 피형자 모두 살인 보다 정당방위 판결이 훨씬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도 시나리오’와 ‘학대 시나리오’처럼 범행의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에 성별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유형별 죄명 판단에 대한 확신도 분석

각 시나리오별로 판결의 확신도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시나리오 유형별로 판결의 확신도 평균을 조사하였다.

살인 판단에 대하여 ‘학대 시나리오’의 확신도 평균이 .12(.615)로 ‘상황 시나리오’ .59(1.377), ‘외도 시나리오’ .60(1.401) 보다 낮았다. 과실치사에 대한 판단 확신도는 외도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도가 1.55(1.948)로 상황 시나리오

표 2. 시나리오 유형별 판결의 확신도 평균

		살인			과실치사			정당방위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상황 시나리오	남	8	.93	1.67	13	1.55	1.86	8	1.21	2.01
	여	2	.24	.91	8	1.14	1.90	19	2.24	1.79
	합	10	.59	1.38	21	1.34	1.88	27	1.72	1.95
외도 시나리오	남	4	.55	1.33	11	1.62	2.19	14	1.62	1.90
	여	5	.66	1.50	13	1.48	1.70	11	1.41	2.01
	합	9	.60	1.40	24	1.55	1.95	25	1.52	1.94
학대 시나리오	남	2	.24	.91	3	.41	1.24	24	3.28	1.89
	여	0	.00	.00	3	.45	1.38	26	4.21	1.52
	합	2	.12	.65	6	.43	1.30	50	3.74	1.76

1.34(1.878), 학대 시나리오 .43(1.2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방위 판단에 대하여 ‘학대 시나리오’가 평균3.74(1.763)로 ‘상황 시나리오’ 1.72(1.954)와 ‘외도 시나리오’ 1.52(1.9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대 시나리오’에서 처럼 범행의 동기가 남편의 오랜 학대로 추정될 경우 살인이라는 판결에 대한 확신도가 다른 두 시나리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황 시나리오’처럼 범행의 동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배우자 살해

사건과 피고인의 외도가 범행의 동기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살인판단에 대한 확신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황 시나리오’와 ‘외도 시나리오’에서는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도가 ‘학대 시나리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량분석을 통해 각 시나리오별로 죄명 판단에 대한 확신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 시나리오 $p < .013$, 외도 시나리오 $p < .029$, 학대 시나리오 $p < .000$ 으로 시나리오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표 3. 시나리오 유형별 죄명 판단에 대한 확신도

	자유도	F	유의확률
상황 시나리오	2	4.492	.013*
상황 시나리오*성별	2	2.869	.061
외도 시나리오	2	3.662	.029*
외도 시나리오*성별	2	.084	.919
학대 시나리오	2	97.160	.000*
학대 시나리오*성별	2	2.266	.108

* $p < .05$

타났다. 이것은 범행동기가 제시된 시나리오(외도 시나리오, 학대 시나리오)와 제시되지 않은 시나리오(상황 시나리오)간의 죄명판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죄명 판단에 있어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나리오별로 죄명을 판단함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성별과 무관하게 남녀 피험자 모두 판결 시 사건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보를 고려하여 판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여성의 범행동기와 과거력(피학대 사실)이 제시되면 살인이라고 언도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판결의 이유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떠한 요인이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시 판결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피험자들에게 판결의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표 4는 피험자들이 각 시나리오의 죄명 판단에 대한 이유를 쓴 것을 범주화하여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먼저 ‘상황 시나리오’의 죄명 판단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살인으로 판결한 경우에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볼 수 있고, 이혼 등의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아내구타 피해 여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정당방위 판단의 이유로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그에 대한 고의성 없는 대응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범행동기가 자세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 시나리오에서 이와 같이 정당방위 판결의 이

유가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의 재판 시 피학대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외도 시나리오’에서는 살인 및 과실치사 판단의 이유로 피학대 여성의 외도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내의 외도가 남편의 폭행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남편의 폭행 사실은 약화되는 반면에, 아내에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어 오히려 피학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그 결과 부당한 판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학대 시나리오’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의 이유로 ‘장기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과 그로인한 아내와 가족들의 피해’사실이 제시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머뭇거렸다면 아내가 죽었을 지도 모른다”, “아내로서는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줬기 때문에” 등과 같이 판결의 이유를 제시하는데서 피험자들이 피학대 여성의 피해사실과 심리상태를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기간 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분노, 공포 등의 피해자의 심리나 정서상태를 과실치사의 판결 이유로 제시한 피험자들도 있었다. 서구에서는 장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후유증을 겪게 됨을 인정하고 이를 피학대 여성의 정당방위를 위한 변론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피학대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여 무죄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피험자들이 피학대 여성의 장기간의 피학대 경험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볼 때, 현실의 재판과정

표 4. 판결의 이유

시나리오 유형과 죄명		판결의 이유	빈도
상황 시나리오	살인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인은 살인	2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은 아님	3
		이혼 등의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함	3
		살인 의도	2
	과실치사	무기의 사용	6
		아내의 대응이 과도하고 극단적	2
		남편의 폭행에 대한 방어로서 우발적인 사고	11
		아내의 살인의도	2
	정당방위	생명의 위협	16
		남편의 폭행에 대한 방어	8
		고의성이 없는 대응	3
	살인	외도로 인해 남편의 폭행과 살인충동 유발	4
외도로 인해 의도적으로 남편 살해할 가능성		1	
외도사실의 발각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한 살인		2	
무기의 사용		2	
외도 시나리오	과실치사	아내의 외도가 남편의 폭행 유발	9
		쌍방과실	1
		순간의 공포와 분노로 판단력 상실	2
		과도한 반응	2
		살인의도 없는 대응	6
		남편의 폭행과 위협	4
정당방위	남편의 위협	18	
	살인의도가 없는 대응	4	
	외도라는 잘못을 했으나 생명의 위협에 대한 본능적 대응	3	
살인	칼을 사용한 의도적 행동	1	
	살인은 살인	1	
학대 시나리오	과실치사	폭력과 우울증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순간적인 살인충동	3
		남편의 위협	1
		폭행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행동 2	2
정당방위	수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34	
	아내와 가족의 피해	4	
	생명을 위협한 남편에 대한 방어	12	

에서도 피학대 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사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선 피학대 여성이 학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의 판결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판결에 있어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상황 시나리오’, ‘외도 시나리오’, ‘학대 시나리오’의 세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남녀 피험자 58명에게 제공하고 각 시나리오를 읽은 후 살인, 과실치사, 정당방위 중 하나를 택하여 판결하게 하고, 판결의 확신성에 대하여 1-5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죄명의 판단 시 세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성별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의 영향은 범행동기가 묘사되지 않은 ‘상황 시나리오’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살인으로 판단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도 시나리오’와 ‘학대 시나리오’와 같이 범행동기가 제공될 경우에는 성별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피학대 여성이 학대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의 판결 시에 범행의 동기로서 피학대 사실, 가족력(학대로 인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나 다른 가족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사실)이 제공될 경우에 살인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의 논의를 요구한다. 첫째, 피학대 여성이 학

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을 판결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양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남녀 피험자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 보다는 과실치사, 정당방위로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으로 유죄 판결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학대 여성이 학대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은 한 건도 없으며, 2005년에 처음으로 피학대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바가 있을 뿐이다. 또한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사건 마다 양형이 남편의 아내 살해사건 보다 평균적인 형량이 더 많아 성불평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계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지속적인 학대가 주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학대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량을 선고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명숙, 2004; 정춘숙 2004). 2004년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남편을 살해한 131명 중 36명이 무기징역, 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94명의 평균 양형기간은 118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여성 살인은 남성에게 의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경험을 가진 여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주여자교도소에 남편살해로 수감된 133명의 수감 중 82.9%가 피학대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44.5%는 남편 살해의 직접적인 범행동기가 피학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수정, 서진환 2005). 따라서 학대 남편에 대한 방어와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최후 수단으로서 남편을 살해한 게 된 피학대 여성의

살해 사건을 판결 할 시에 피학대 여성의 피학대 경험, 그로인한 후유증, 가족력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기초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법제도적 개선점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피학대 여성의 살인 행위를 판결하는 데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과 학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Follingstad(1997)의 모의 배심원 실험연구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준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피험자의 70%가 과거 피학대 경험의 심각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학대 여성의 학대 남편 살인 사건의 조사 및 판결과정에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이수정, 2006; Follingstad, 1996). 보수적인 국내의 형사법체계 내에서 피학대 여성의 학대경험이나 심리상태는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강압적인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해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협박과 멸시 등의 학대로 인해 인격적 존엄성이 훼손되어 만성적인 우울증, 무력감,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입하여 피해여성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학대의 역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남편을 살해한

다수의 여성들이 조사과정에서나 법정에서 자신이 받아 온 학대 상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정한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이수정, 이진환, 2005; Marvin, 1997).

우리나라에서도 남편을 살해하여 청구여자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김영희 외, 2004),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그냥 재판을 받았다”, “김찰이 너무 급하게 사건의 전말을 적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즉 사건 후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겪은 힘든 결혼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범여부와 살인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수사 관행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편을 살해한 다수의 여성들이 조사과정에서나 법정에서 자신이 받아 온 학대 상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공정한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수사 및 재판 현실에서 깊이 새겨볼 대목이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기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법원에 이르는 형성정책 체계 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대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오랜 세월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자기방어를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서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기초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인 초동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피학대 경험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재판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피학대 여성의 배우자 살해 사건의 재판과정에 학대사실의 제공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재검토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있어 정당방위 요건으로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 상당성을 요구한다.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이란 ‘공격이 직접 임박한 것, 방금 시작된 것 또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판례상 학대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는 없다. 현실적인 생명에의 위협이나 폭력이 심각한 상태에서 살해한 경우에도 아내의 남편 살해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 또한 없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정당방위 판결의 이유로, “아내는 수 십년간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왔고”, “25년간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명백한 정당방위”, “25년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고 사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험자들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정당방위 판결의 이유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피학대 여성에게 있어 침해의 현재성은 폭력행위의 발생여부나 사실 뿐만 아니라 폭력과 협박, 학대의 반복과 강화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강제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침해는 현재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4) 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재성의 요건을 확대해석한 사건으로 1985년 *State v. Hundley*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구타하던 남편이 구타를 멈추고 담배심부름을 시켰을 때 피학대 여성이 남편을 사살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져 온 피학대 여성의 공포와 두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 캐나다에서

정당방위에 있어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방어의 필요성은 통상 건전하게 사유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될 것을 요구받는다. 즉 자기보호를 위해 남편을 죽이는 것이 필요했다는 피고(아내)의 합리적 믿음이 합리적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가정폭력피해 상황에 대한 일반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합리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대결 상황(남편이 수면중이거나 잠시 쉬는 중)은 급박한 위험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여성들이 가졌던 위협감은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무엇보다도 살인을 할 정도라면 그 이전에 폭력관계를 떠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 살해 여성의 믿음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내가 아내였어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것 같다”, “남편의 폭력은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큼 심했다”, “부인이 남편을 찌르지 않았다면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항상 남편으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남편을 죽이지 않았으면 충분히 자신이 죽임을 당할 처지이

는 *R.v.Lavallee* 판결에서 비대결 상황에서의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상습적인 구타 남편이 피고인을 가혹하게 구타하고 난 후 파티에 참석하고 돌아 온 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등을 돌리고 방을 나갈 때 피곤인 아내가 뒤에서 총을 쏘아 남편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 맞는 여성에게 남성의 공격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녀에게 할부살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다” 등과 같이 정당방위의 판결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의 기준으로서 주관성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피험자들이 폭력피해 경험의 결과로 갖게 된 주관적 인상과 판단을 인정하여, 사건 당시 피고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였는가를 고려하고, 이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남편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증식시키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경우 정당방위의 요건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 상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 1. 31.) 여성무기수 절반이상 폭력남편 살해죄.
-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여성 살인범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치료적 사범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
- 김태명. (2006).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형사법연구.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 류전철. (2001). 양형결정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심리절차의 도입.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손지선. (2006). 가족살해의 특성. 경기대학교 대학원.
- 송성자. (2005).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수잔 브라이슨. (2002).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여성주의 번역모임 ‘고픈’ 역. 2003. 인향
- 이명숙. (2004).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남편살해와 법제도적 검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 자료집.
-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가정폭력·성폭력 및 관계공무원 교육 자료집.
- 이수정. (2006). 최신범죄학. 서울: 북카페.
- 이수정, 서진환. (2005). 배우자 살인으로 수감 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심리특성에 근거한 면책사유 연구. 여성연구. 제69호.
- 이영이. (200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한국심리학회: 이상심리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 179-196.
- 이영란. 한국양형론. 서울: 나남
- 원호택. (1997). 이상심리학. 법문사.
- 윤형관. (200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8호.
- 정춘숙. (2004). 폭력피해 여성의 인권과 정당방위.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살인 vs 정당방위, 여성에게 생존의 권리 없는가?. 서울여성의전화 토론회 자료집.
- 조국. (2001).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형사법연구. 제15호. 한국형사법학회.
- 조주현. (1993). 일탈적 성에 대한 정치 문화적 각본. 국가와 성통제. 한국여성학회 제9회 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 채규만. (2001). 성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 채영주. (2005).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남편살해 심리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 프랜시스 하이덴슨. (1985). 여성과 범죄. 이영

- 란 역. 1993. 서울: 나남.
- 하태명. (2006).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심리절차의 도입.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학술회의자료집.
-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한인섭. (1996).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2호.
- 한인섭. (2005). 여성무기수형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시설내 처우. 형사정책연구. 63호.
- Bartol, C. R. (1999). Homicide and Assault".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NJ: Prentice Hall
- Craven, Z. (2003). "Battered Woman Syndrome". Austria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Clearinghouse.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PTSD. New York: Guilford press.
- Follingstad, D. R. (1996). Forensic evaluations of Battered Women Defendants: Relevant Data to be Applied to Elements of Self-Defens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996.
- Follingstad, D.R. (1997). The Impact of Elements of Self-Defense and Object Versus Subjective Instructions on Jurors' Verdict for Battered Women Defenda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October.
- Jane Goodman-Delabunty, Lynne Forster Lee, and Robert Foster Lee. (2005). Dealing with the Guilty Offender. Psychology and Law.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ennifer E. Dunne. Information Seeking and Use by Battered Women: A "person-in-progressive-situation" approach. (2002).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4.
- Schuller, A., Hastings, A. Trials of Battered Women Who Kill: The Impact of Alternative Forms of Expert Evidence. Law and Behavior, Vol.20, No, 1996.
- Schuller, A., Cripps, J. Expert Evidence Pertaining to Battered Women: The Impact of Gender of Expert and Timing of Testimony. Law and Behavior, Vol.22, No, 1998.
- Sharon E. Hartline, (1997). Battered Women Who Kill: Victim and Agent of Violenc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28.No2, Fall.
- Terrance, C.A., Peebles, S., Kasian,, M., Spanos, P., (1993). Battered woman Who Kill. Law and Behavior, Vol.17, No.3. 1993
- Terrance, C.A., Kimberly matheson and Nicholas P. Spanos. (2000). Effect of Judicial Instructions and Case Characteristics in a Mock Jury Trial of Battered Women Who Kill. Law and Behavior, Vol.24, No.2.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ringer. Study on the Sentencing of the Battered Woman Who Killed Abuser
- Wrightsmann, Lawrence S. (2001) "Battered Woman Syndrome and Domestic Violence". Forensic Psychology.

1 차원고접수 : 2007. 2. 06.
 심사통과접수 : 2007. 3. 22.
 최종원고접수 : 2007. 3. 28.

A Study on Sentencing of the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r

Hyun Jung Kim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Many studies reported that the battered women killed their abuser because they tried to defend themselves. But the battered women's experiences has been not considered in our society. Because there many prejudices about the battered women, ethical criticism for killing spouse, and conservative judicial system. It cause to sentence more a battered women who kill abuser than abuser who kill woman. In contrast the battered women syndrom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used to defense the battered women who killed abuser. Jurors who were offer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wife battering and expert testimony judge more not guilty verdicts than jurors who were not. This study examined how factors in battered women's cases affect juror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presented the mock jurors three types of scenarios. First scenario described the general case. Second scenario involved the adultery of the battered woman. The third scenario involved abuse history and severity of past abuse. Of the three manipulated variables, abuse history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for predicting not guilty verdicts. This means that when the past beating experiences are offered to mock jurors, they returned more not guilty. This finding propose change and improvement of judicial system to investigate the abuse history in battered woman's case

Key words : wife battering, battered women who kill spouserr, PTSD, sentence, self-defence